

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, 대리운전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

“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
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“안전보건교육”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”

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(27종) 운전자, 골프장 캐디, 택배원, 퀵서비스 배달원,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
「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」과 「특별 교육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!



책임주체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



강사자격

-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
-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
-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
-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

※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, 「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」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1호) [별표 1] 참조



교육시간

최초노무제공시 교육	2시간 이상 (단기간,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,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)
특별교육	16시간 이상 (단기간,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)

※(단기간작업)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(간헐적작업)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


교육내용

최초노무제공시 교육

-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
-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
-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-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-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
-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※ 특별교육(40종)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[별표 5] 참조

안전보건공단에서는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**하고 있습니다.

신청 |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(www.safetyedu.net)

문의 | **1644-5656**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행



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**6개월 이상 경험**이 있는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교육대상		적용되는 교육시간	면제전 교육시간
최초노무 제공시 교육	단기간 작업	1시간이상	2시간이상
	간헐적 작업	30분이상	1시간이상
특별교육	단기간 작업	8시간이상	16시간이상
	간헐적 작업	1시간이상	2시간이상



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**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**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.



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**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교육일지 등)**를 **비치**하여야 합니다 ※ 교육의무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교육대상 1인당 10만원~150만원)



안전·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 교육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다만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**안전·보건조치 의무(작업시 준수사항,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·알림·교육 등 포함)** 위반시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

교육 대상 건설장비는 아래와 같이 **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 건설장비가** 해당됩니다.

▪ 불도저	▪ 모터그레이더	▪ 콘크리트펌프	▪ 천공기
▪ 굴삭기	▪ 롤러	▪ 아스팔트믹싱플랜트	▪ 향타 및 향발기
▪ 로더	▪ 노상안정기	▪ 아스팔트피니셔	▪ 자갈채취기
▪ 지게차	▪ 콘크리트벙칭플랜트	▪ 아스팔트살포기	▪ 준설선
▪ 스크레이퍼	▪ 콘크리트피니셔	▪ 골재살포기	▪ 특수건설기계
▪ 덤프트럭	▪ 콘크리트살포기	▪ 쇄석기	▪ 타워크레인
▪ 기중기	▪ 콘크리트믹서트럭	▪ 공기압축기	